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가이드북

2018. 04







1. 공고내용 확인 : 상세내용은 '붙임 1'참조

※ 접수 마감일, 접수방법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4, 27.(금)~ 5, 31.(목),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후 증빙서류 우편제출

- step 1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링크사이트

- step 2 : 증빙자료 등기우편 제출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유망중소기업 선정 담당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 인증종별 자격여부 확인 :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 인 중 : 1995년~2013년에 기인증 이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 재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제외(신청불가)

(인증이력의 확인문의 ☎031-259-6118, 6112, 6113)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3. 인증종별 평가기준 확인 :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
 - 최초인증 : 경영평가(재무비율분석), 특성평가
 (기술개발투자, 해외수출 및 고용), 일반평가(업력, 복지 및 후생수준 등),
 기술품질평가(제품인증, 특허 등)등
 - 재 인 증 : 양질의 일자리 성장성 평가, 지속가능경영능력 평가, 품질혁신성평가 등

.....



4. 필수서류 제출

- 신청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 협력(partner.nicetcb.co.kr)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청사이트





접속후 소프트웨어 설치(로그 인 불필요)

회사 공인인증서 필요(국세청 서류 연동용)

최초인증/ 재인증 버튼 클릭



신청자 형태에 따른 버튼 클릭 *법인사업자 선택

(국세청 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무제표, 납세증 명,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연계

접수페이지에서

-신청내용 영역에 발급유형 및 제출처 등을 필요에 맞게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먼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규 or 재인증 대상여부 확인 화면 중간 부분에서 사업자번호로 확인

및 고객문의 02)2124~6955
▲ 개인정보처리방점

<주의사항>

^{1.} 재인증 신청 대상 여부는 상기의 메뉴를 이용 확인 바랍니다.

^{2.} 관련 문의 :

시스템관련 02-2124-6955 (NICE평가정보 TCB사업본부) 서류 및 인증심사 관련 031-259-611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민원증명 발급 - 국세청(www.hometax.go.kr)_별도 발급 불필요(신청시 자동연동)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참고]



신청시 자동연동, 발급 불필요 홈텍스 접속후 로그인 민원증명 선택



사업자등록증명 버튼 클릭 * 최근 9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접수페이지에서

-신청내용 영역에 발급유형 및 제출처 등을 필요에 맞게 선택



발급번호 확인방법 ① 또는 ② ①홈텍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확인가능 ②증명서(인터넷열람 또는 출력분) 좌측상단의 일련번호를 온라인신청 시 입력예정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방법[참고]



신청시 자동연동, 발급 불필요

홈텍스 접속후 로그인 민원증명 선택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최근 9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접수페이지에서

-신청내용 영역에 발급유형 및 제출처 등을 필요에 맞게 선택

발급번호 확인방법 ① 또는 ② ①홈텍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확인가능 ②증명서(인터넷열람 또는 출력분) 좌측상단의 숫자시리얼을 온라인신 청시 입력예정



.....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방법[참고]



신청시 자동연동, 발급 불필요

홈텍스 접속후 로그인 민원증명 선택



표준재무제표증명 메뉴 선택

- 25
- 민원증명 발급 민원24(www.minwon.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참고]



신청시 자동연동, 발급 불필요

민원24 접속후 로그인

- -테마별 민원>세금>지방세 납 세증명 선택
- 메인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에 서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_		Tana .						
7	世-	계인 🗸						
개인+	43.	4/8/23	10	선생활일~	1007 100 100			
사업자	日用物文		[사업장명	으로 납쳐들면서를 받급 및	고자 함 경우, 사업지	(편성률 입력)		
Fa*	기본주소	취심						
	상세주소							
H시엄장	기본주소	주소경색						
	상태주소							
75.00	변호=	055						
AF225	出善祭	24						
			291	SMS				
준명서시	8年1	마금수량	V	대공 지급자				
			45	용방법				
수함	sn-	검색 온라	만발급(본인출력)	수량/제출기관 선택	84			
WII	年中=	1 中						
선행별		2016 년 12 월 27 일						
			당으면 한번에 경제함 등은 브라우져 종료시	58/4 H 19 5 3 J. L. 1995 L 199				

발급유형 및 제출처 등을 필요 에 맞게 선택

★ 주의사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받아서, 스캔 및 나이스신용평가 담당자에게 전달(수동입력 진행)



● 기타 증명서 발급기관 목록

제출서류	발급기관(처)	사이트	비교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공장등록증명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산업단지입주업체 확인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	중소기업청	www.bi.go.kr	
건축물대장	행정자치부(민원24)	www.minwon.go. kr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1 379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1 379
여성기업 확인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031-211-2235 ☎031-850-3777
장애인고용의무준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부대 증빙자료의 준비

※ 인증종류별 평가기준이 상이하므로 평가기준 열람 후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필수 :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제외

- 선택 : 인증심사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반영

▶ 최초인증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추천	평가표 (신청기업 자가채점)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나, 제출자료에 따른 자가진단 권고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도 양식 파일다운로드 가능
필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최근 2년 (2017년, 2016년)의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기본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	
선택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선택	공장등록증명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공장등록증명 발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팩토리온(<u>www.femis.go.kr</u>) 공장등록증명이 없는 기업은 건축물대장 제출요망
선택	제조공정설명서	공장등록증명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함 ②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가능
선택	수출실적확인서	"1) 또는 2)중 선택 1)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인 경우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 (www.KITA.net →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인 경우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 주문' 버튼 클릭하여 프린트"
직징	'복지 및 후생수준	
선택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실적증빙	최근 2년 이내(2016년 이후) 근로자 자기개발비 지원(학원비, 학비 등) 사규 내부방침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만 인정 (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고용보험환급과정 등 사업주위탁훈련비는 해당없음
선택	직장내 취미생활지원 실적증빙	최근 2년 이내(2016년 이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위한 동호회 활동비 등 사규·내부방침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만 인정 (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직영·위탁, 보조금등은 인정 / 사무실내 탁구대 1대 설치 등은 불인정
선택	탄력근무/육아휴직제 도	관련 제도 결재문, 사규 등 확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타 >	기관 표창 및 수상이력	
선택	도지사 및 장관이상 표창 수상	최근 3년 이내(2015년 이후) 표창 수상만 인정 장관이상, 경기도外 지방자치단체장 표창도 인정 개인상장 수여는 불인정
선택	시장·군수 및 타 공공기관 표창 수상	최근 3년 이내 (2015년 이후)표창 수상만 인정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표창도 인정 개인상장 수여는 불인정
기술	·품질관리수준(`14년 1	
선택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인증의 종류: 9001,14001,14004, 22000,27001,TL9000,K-OHSAS18001 등
선택	해외규격인증 사본	- 가이드북의 참고자료(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선택	국내규격인증 사본	- 가이드북의 참고자료(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선택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출 원포함) 사본	※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선택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선택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선택	기술관련 상 수상기 업	- 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 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등
선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수출)중소 기업 지정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발급분에 한함
기술	·혁신노력(유효기간 내	
선택	정부의 기술개발 과 제사업 참여	(2016년 1월 1일 이후 수행실적만 인정)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선택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	(2016년 1월 1일 이후 수행실적만 인정)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선택	세계일류상품생산 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선택	신지식인 선정	한국신지인협회장 명의의 인증서
선택	기 술 혁 신 형 기 업 (INNO-BIZ)인증서 시본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인증서
선택	부품소재전문기업 확 인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선택	기업부설한구소 인정서 시본 또는 연구한분서 인정시 시본	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79 /www.rnd.or.kr)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사실과 다른 서류제출 로 간주되어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선택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선택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시본	환경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기타	· 사회공헌 및 특별법	
선택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명의의 확인증 ※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선택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선택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장애인의무고용준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신청서 확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상시근로자 기준 2.9%('17년)
경기	도 인증기업	
선택	경기도 스타 선정기업	선정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사본
선택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서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경기도 G-마크 인증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재인증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권고	평가표 (신청기업 자가채점)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나, 제출자료에 따른 자가진단 권고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도 양식 파일다운로드 가능
필수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기발급 받은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인증서사본이 없을 경우 별도 문의(☎031-259-6118, 6112, 6113)
필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2년 (2017년, 2016년)의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선택	기술개발 전담인력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현황표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79 /www.rnd.or.kr)
기본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	
선택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선택	공장등록증명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공장등록증명 발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팩토리온(www.femis.go.kr) 공장등록증명이 없는 기업은 건축물대장 제출요망
선택	제조공정설명서	공장등록증명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함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도 양식 파일다운로드 가능
기술	·혁신노력(유효기간내 '	인정)
선택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출 원포함) 사본	※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선택	정부의 기술개발 과 제사업 참여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선택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선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79 /www.rnd.or.kr)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사실과 다른 서류제출 로 간주되어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기술	·품질관리수준(유효기건	
선택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인증의 종류: 9001,14001,14004, 22000,27001,TL9000K-OHSAS18001 등
선택	해외규격인증 사본	
선택	국내규격인증 사본	
선택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선택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기관 우수기업 지정 및	수상이력(`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선택	기술관련 상 수상기 업	- 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 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등
선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수출)중소 기업 지정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발급분에 한함
선택	세계일류상품생산기 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선택	신지식인 선정	한국신지식인협회장 명의의 인증서
기타	· 사회공헌 및 특별법(·	유효기간 내 인정)
선택	여성기업 확인서 사 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명의의 확인증 ※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선택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선택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장애인의무고용준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신청서 확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상시근로자 기준 2.9%('17년)
경기	도 인증기업(유효기간	내 인정)
선택	경기도 스타 선정기업	선정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사본 ※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선택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서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선택	경기도 G-마크 인증 사본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온라인신청 사이트 이용문의 ☎ 02-2124-6955, 나이스 평가정보
 -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 제출방법
 - 회원가입 및 시스템장애 등

7. 인증심사 증빙서류의 제출 [신청종결]

- ◎ 제출기한 : 2018.5.31.(목)까지,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 마감일 18:00전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 ※ 다수의 신청으로 인해 제출서류의 송달확인이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보내실 곳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SOS지원팀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사 담당자 앞

◎ 우편제출 서류목록 : 인증심사 신청서 및 기타 선택 증빙자료(1+2)

구 분	최초인증	재인증
1) 유망중소기업 인중심사 신청서 * 온라인 신청후 출력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온라인)	필수(온라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필수(온라인)	필수(온라인)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필수(온라인)	필수(온라인)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필수(온라인)	필수(온라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2개년 12월 귀속분)	필수(온라인)	필수(온라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	필수(온라인)
-기술개발 전담인력 현황표	×	선택(온라인)
2) 기타 선택 증빙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으로 우편제출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요망 (원본대조필 불필요)	선택 (오프라인)	선택 (오프라인)

营回

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1	AAD(미그권다원원)	0.5	A OCTO(조그그리 카라카드 기원 호그)	40	CD(0 리코트웨티크)
	AAR(미국철도협회)	25 26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9 50	CE(유럽공동체마크)
	ABS(미국선급협회)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_	ARAI(인도자동차협회)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51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ACRS(호주신뢰성인증)			52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53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4	CNS(대만국가표준)
7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3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5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8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32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56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9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33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57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10	AENOR(스페인규격협회)	34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8	COSQC(이라크표준)
11	AGA(가스안전인증-호주)	35	BAF표준(알러지협회)	59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12	AGA(미국가스협회)	36	BBA(영국건자재인증)	60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3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37	BIS(인도제품인증)	61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4	ALE 1.0(RFID 제품인증)	38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62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15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39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63	CR(대만선급)
16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40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64	CSA(캐나다표준규격)
17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41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65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18	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42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66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9	ANSI(미국규격협회)	43	BSI(영국표준협회)	67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20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4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6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1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45	BSMI(표준검험국)	6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6	BV(프랑스선급협회)	70	CU(러시아강제인증)
23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47	CCC(중국필수인증)	7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4	API(미국석유학회)	48	CCS(중국선급인증)	72	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73	DIN(독일규격협회)	99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125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74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100	FTC(화염시험국제인증)	126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5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101	GL(독일선급협회)	127	ISIRI(이란강제인증)
76	DNV(노르웨이선급협회)	102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128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77	DOT(미국운수성)	103	GOST(러시아표준규격)	129	일본선박 형식승인)
78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104	GOST-K(카자흐스탄인증)	130	JAS(일본유기제품인증)
79	Eco-Labeling(EU 환경마크)	105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131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0	EFSA(유럽식품안정청)	106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132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8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107	GS(독일품질안전)	133	JIS(일본표준규격)
82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108	GTT(프랑스GTT선급)	134	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83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109	G7Master(국제인쇄표준)	135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84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110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136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8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111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137	KTW(독일식수관련인증)
86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112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138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1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113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139 LFGB(독일식품용품법)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114 |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140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88

89	Regulation(EC)(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115	HSNO(유해묵직과시규생묵과려이즉)	141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LR(영국선급협회)
	EU-MED(ㅠ립선칙성미인증) F☆☆☆☆(일본친환경규격)				
	F ☆ ☆ ☆ ☆ (월근 신완 경 ㅠ 격)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IC(캐나다산업성)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 플로리다주)
-	77 () (2 0 0 2 1 2 1)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 , , , .
-	FCN(미국식품접촉물질(재료)등록제도)		ICC-E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OH(중국보건부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MPHPT(일본우정통신성)
_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NAL(중국통신인증)
151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197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152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75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19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153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176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19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154	NF(프랑스표준규격)	177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200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55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178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201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156	NFRC (창호단열규정)	179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202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57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180	PTCRB(북미휴대폰인증)	203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158	NIM(중국계량과학원)	181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204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82	RDSO(인도철도인증)	205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60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183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206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
161	NK(일본선급협회)	184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207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162	NMMA(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	185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208	TFDA(대만의료기기)
163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186	RS(러시아선급협회)	209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164	NOP(유기제품인증)	187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210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65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188	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211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166	NPC(소음공해규제기관)	189	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	212	TSE(터키강제인증)
167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190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21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168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91	SCS (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	214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69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92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215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70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93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216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17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94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217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72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195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218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73	Open ADR(전력수요관리인증)	196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219	VdS(독일보험협회인증)
220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228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236	일본위생허가
22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229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237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MedicalDevices)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230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38	중국미생물수입등록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중국유기농식품인증
224	WHO	232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WPC(인도통신기기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241	중국위생허가
	WPS(선급용접절차승인)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227	WQA(미국수질협회)	235	일본불연재료인증		

[별표1.] 국가별 주요 규격현황

국가별	규격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AR(미국철도협회)	DOT(미국운수성)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BS(미국선급협회)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NOP(유기제품인증)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PC(미국위생도기규격)
	AGA(미국가스협회)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DA(미국식품의약품국)	PTCRB(북미휴대폰인증)
17(10)	ANSI(미국규격협회)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미국(49)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PI(미국석유학회)	ICC-ESEvaluationReport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ME(미국기계학회)	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WQA(미국수질협회)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FRC(창호단열규정)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유럽(18)	CE(유럽공동체마크)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Eco-Labeling(EU 환경마크)	EUDirective76/768/EEC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FSA(유럽식품안전청)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도이(10)	DIN(독일규격협회)	LFGB(독일식품용품법)	VdS(독일보험협회인증)
독일(10)	GL(독일선급협회)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여구(6)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LR(영국선급협회)
영국(6)	BBA(영국건자재인증)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2)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6)	BV(프랑스선급협회)	DGCCRF(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프랑스 GTT선급)
三号二(0)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NF(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2)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1)	AENOR(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1)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2)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4)	DNV(노르웨이선급협회)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고드웨이(4)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BAA(일본자전거승인)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일본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F☆☆☆☆(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JPAL(일본의료기기)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ョモ (21)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JPAL(일본의료기기) MPHPT(일본우정통신성)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41)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원순선학생식중단)		



국가별	규격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CU(러시아강제인증)	RS(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러시아(9)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1)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2)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4)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NS(대만국가표준)	CR(대만선급)
	TFDA(대만 의료기기)		
브라질(3)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다아라바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2)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2)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6)	ARAI(인도 자동차 협회)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고 (0)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RDSO(인도 철도인증)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중국필수인증)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	CCS(중국선급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식품인증
(18)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MOH(중국보건부인증)	중국 미생물수입등록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NAL(중국통신인증)	중국 수입첨가제등록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1)	GOST-K(카자흐스탄 인증)		
-No.1 - 1(4)	CSA(캐나다표준규격)	IC(캐나다산업성)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캐나다(4)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쿠웨이트(1)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ACRS(호주신뢰성인증)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Z (11)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호주(11)	AGA(가스안전인증-호주)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이라크표준)		
남아공(1)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라아(1)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AEC-Q200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FTC(화염시험인증)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ALE 1.0(RFID 제품인증)	G7Master(국제인쇄표준)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AF표준(알러지협회)	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 HALAL(IFANCA)(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국제(45)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BSMI(표준검험국)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Golf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COSPAS - 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WHO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국가별	규격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참기

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수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어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한국어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F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영소합단체표준 한국조명영소합단체표준 한국조명영소합단체표준 한국조명영합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연합동조합단체표준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도도상승성능 단락성능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 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합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간물HACCP 축간물HACCP 축간명이증은 문항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콜드다운마크 향규마크 SF마ㅋ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월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SSS인증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 A1.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만, 별도의 서류접수 확인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등기우편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유망증기 인증심사 담당자앞
- ▶ Q2. 재인증 신청하는데, 최초인증 받았던 인증서 사본을 분실하였습니다. 필수제출서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 원칙적으로는 재발급 받으셔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발급소요시간 제약 등으로 불가피 할 경우 ☎031-259-6112로 전화주시면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Q3. 평가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동 평가표를 공개한 목적은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며, 평가지표의 종류와 배점 등에 대해 참여하신 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평가를 권고하는 것은 신청기업에서 심사점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 평가표상에 기재, 산출하신 자료는 오류여부 등이 발생시에도 감점되지 않으며, 심사평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가채점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시스템 및 담당자가 세밀한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Q4. 몇 점이 되어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A4. 유망중소기업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유망중소기업 선정의 경우에는 매년 경기도지사가 선정계획에서 발표한 인증기업수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종료후 고득점순 정렬후 선정규모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신청단계에서 섣부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5. 평가표상의 빨간색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

A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기준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지표 동 기준통계를 기초로 하여 신청기업의 매출신장률, 수익성 등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Q6. 기본요건(사업영위기간 2년) 미만이어도 신청가능한가?

A6. 유망중소기업 인증서는 경기도의 대표인증으로 공신력의 확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의 사업영위, 사업영위기간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인증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된 정통성있는 인증사업으로 기간 간 형평등을 고려, 2년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인증사업도 최소 3년을 요건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2년 미만이신 경우, 안타깝지만 다음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7.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영위기간 인정은?

- A7. 포괄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사업주체로 인정하여, 전 기간을 사업 영위기간으로 인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주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기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개인기업의)폐업사실증명원

▶ Q8.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사업영위기간의 인정 및 평가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은?

A8. 흡수합병으로 볼 경우(한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소멸하면서 인수합병 절차를 거치는 것)에는 동일주체로 간주하여 사업영위기간의 영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설합병의 경우(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의 목적을 두고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되는 것)에는 신설합병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사업영위기간 기산을 하여 평가반영합니다. 하펴 한병에 따른 재무실점은 기업이수 및 한병등에 과하 회계처리 주침에 의거

한편, 합병에 따른 재무실적은 기업인수 및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 기준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 Q9. 인천 등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하순 경기도로 공장이전을 했다. 경기도 유망중기 인중심사에 참여가능한가?
 - A9. 2년이상 가동중으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이신 경우 신청가능하십니다.
- ▶Q10. 공고상에 신청제한 요건에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기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은 기초지자체로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미필로 과태료(벌금)을 납부하고 시정조치 완료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가능한가?
- A10.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 개최전에 관련 부처(경기도 공단환경 관리사업소, 기초 지자체, 경기도 환경국 등)에 2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있었는지, 행정처분의 효력 유지기간 등에 대해 조사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 Q11.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최초인증 당시 기업명과 다릅니다. 상호변경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1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주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를 추가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Q12. 홈텍스 출력분 재무제표만 인정되나요?
 - A12. 신청기업의 결산재무제표로도 신청가능하나 온라인신청시 스캔후 첨부해야 하는등 번거로우실 수 있으므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번호를 입력을 권해드립니다.
- ▶ Q13. 수출실적증명은 무역협회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나요?
- A13.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인 경우
 -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

(www.KITA.net →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인 경우
-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후 로그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 '증명서 주문' 버튼 클릭하여 프린트"